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A 2006.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 - 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인에서 120만원, B 직장인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됩니다. ☎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882-3)

Q 직원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채무액이 있을 경우 급여 압류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한편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증설 현장조사 업무를 폐지하여 전기사용편의를 도모하는 대신 고객의 자발적인 계약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월간 450시간 초과 사용고객에 대한 추가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요금제도에 관한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00%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전에 증설 신청을 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설비 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A 한전과 계약한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증설을 포함한 총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과 기존계약에 의하여 조정된 요금과의 차액(변압요금)에 대하여 2배 한도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Q 【변압기설비 무단증설】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중 한전으로부터 계약유보 통보를 받았습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Q 【450시간 추가요금제도】 별도의 증설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가요금 납부하면 현재의 계약전력대로 계속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인가요?

A 한편과 계약한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증설을 포함한 총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과 기존계약에 의하여 조정된 요금과의 차액(변압요금)에 대하여 2배 한도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Q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악몽을 꾸거나 혼자 자기를 두려워하고 불끄는 것을 싫어합니다.
-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닫아걸고 반복적인 확인을 시도합니다.
-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의 퇴행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Q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평소 노인성치매증세를 보이던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82세가 되던 1997년 5월 31일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살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고창 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아버지처럼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귀하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인 1997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5년이 경과한 2002년 6월 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바, 귀하는 부재자인 귀하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는 가정법원, 그 외의 지역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귀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면 2002년 6월 1일자로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54조). ☎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저하되기도 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에 과도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나요?** 어린이가 나타내는 증상은 어린이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2~3주 정도 지속되기도 하며, 이러한 증상은 부모와 그 외 중요한 사람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린이가 당신으로부터 사랑 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아이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것은 어린이가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부터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계약이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격적·정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봉급·임금·수당·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 받는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유직업소득 등 사업소득은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

Q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연구장학금은 과세대상 아님】 대학원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설립연구기관”이라 함)이 본교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록금 및 연구장려금 명목의 장학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급여와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Q 【변압기설비 무단증설】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중 한전으로부터 계약유보 통보를 받았습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한편과 계약한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증설을 포함한 총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과 기존계약에 의하여 조정된 요금과의 차액(변압요금)에 대하여 2배 한도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Q 【450시간 추가요금제도】 별도의 증설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가요금 납부하면 현재의 계약전력대로 계속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인가요?

A 한편과 계약한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증설을 포함한 총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과 기존계약에 의하여 조정된 요금과의 차액(변압요금)에 대하여 2배 한도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Q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악몽을 꾸거나 혼자 자기를 두려워하고 불끄는 것을 싫어합니다.
-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닫아걸고 반복적인 확인을 시도합니다.
-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의 퇴행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Q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평소 노인성치매증세를 보이던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82세가 되던 1997년 5월 31일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살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고창 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아버지처럼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

의·학·상·식

포천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강진욱**



Q 【변압기설비 무단증설】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중 한전으로부터 계약유보 통보를 받았습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한편과 계약한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증설을 포함한 총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과 기존계약에 의하여 조정된 요금과의 차액(변압요금)에 대하여 2배 한도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Q 【450시간 추가요금제도】 별도의 증설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가요금 납부하면 현재의 계약전력대로 계속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인가요?

A 한편과 계약한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증설을 포함한 총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과 기존계약에 의하여 조정된 요금과의 차액(변압요금)에 대하여 2배 한도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Q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악몽을 꾸거나 혼자 자기를 두려워하고 불끄는 것을 싫어합니다.
-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닫아걸고 반복적인 확인을 시도합니다.
-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의 퇴행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Q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평소 노인성치매증세를 보이던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82세가 되던 1997년 5월 31일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살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고창 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최적의 입지공간 공장임대



제조업·철공장·금속공장 등에 최적

보증금 : 1500만원
월 임대료 : 180만원

공장등록필, 한동에 동력 30kw, 넓은 주차공간 보유

